

# 안산시 장학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| 170

제출년월일 : 2008. 6.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아이디어 장학금」 제도를 신설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제안·공모에 잠재적인 고객이자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,
- 「안산시 장학금 조례」 및 「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장학금의 종류에 “아이디어 장학금”을 신설하여 “애향장학금, 산업체 근로자장학금, 아이디어 장학금”으로 조정함(안 제3조).
- 나. 도울장학생을 “희망장학생”으로 변경하고 “아이디어장학생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(안 제4조).
- 다.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운영에 관한 심의는 「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「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」에서 심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아이디어 장학금의 지급은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급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중 “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”를 삭제함(안 제11조).
- 바. 아이디어 장학금의 지급액은 “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(안 제12조).

**개정조례안 : 별첨**

**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

**관계법령서발췌서 : 해당없음**

**예산수반사항**

아이디어 장학금 : 12,000천원

**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**

입법예고 : 2008. 5. 7. ~ 2008. 5. 27.(20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 : 별첨**

안산시 장학금 조례개정 방침

안산시 장학금 조례

# **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장학금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애향장학금,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” 을 “애향장학금,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, 아이디어장학금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애향장학금” 을 “애향장학생” 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의 “도울장 학생” 을 “희망장학생” 으로 하며, 같은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아이디어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(교)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시의 제안·공모 등에서 채택된 자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심의)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장학금의 지급) 애향장학금은 1년 단위로 선발 지급하고, 산업체근로자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시부터 졸업 시까지로 하며, 아이디어장학금은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.

제11조 중 “다음 각호의 1” 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.

1.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(다만, 아이디어장학생은 제외한다.)

제12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아이디어장학금 지급액은 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업료를 지급 받는 자는 수업료 대신에 학교운영지원비, 교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위원회 폐지 등)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평생교육과장 이 만 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지원담당 허 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허 진 (행정 2124)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은 <u>애향장학금</u> , <u>산업체근로자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3조(장학금의 종류) ----- 애향장학금, <u>산업체근로자장학금</u> , <u>아이디어장학금</u> 으로 구분 한다.
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<u>애향장학금</u> 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~2. (생략) 3. 도울장학생 :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 및 기타 불우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출신학교장이 추천한자 ② (생략) <신설>	제4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<u>애향장학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희망장학생</u> :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아이디어장학생</u> 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(교)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시의 제안공모 등에서 채택된 자로 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6조(심의위원회) ①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학금 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	제6조(심의위원회)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 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 <삭제>  <삭제>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① 위원은 부시장·시 장학금업무 담당국장·시 교육청 장학금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u>&lt;삭제&gt;</u>
<p>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정지 등의 심사(의)에 관한 사항</p> <p>2.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</p>	<u>&lt;삭제&gt;</u>
<p>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u>&lt;삭제&gt;</u>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장학금의 지급) <u>애향장학금은 1년 단위로 선발 지급하고,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장학금 선발시 부터 졸업시까지 지급한다.</u></p> <p>제11조(지급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시관외로 이주한 경우&lt;추가&gt;</p> <p>2. ~3. (생략)</p> <p>4. <u>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</u></p> <p>5. ~6. (생략)</p> <p>제12조(장학금의 재원 및 지급액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,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  <u>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업료를 지급받는 자는 수업료 대신에 학교운영 지원비, 교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</u></p>	<p>제10조(장학금의 지급) <u>애향장학금은 1년 단위로 선발 지급하고,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장학생 선발시 부터 졸업시까지 지급하며, 아이디어장학금은 학기별로 선발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제11조(지급정지) ----- 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(다만, 아이디어 장학생은 제외한다.)</p> <p>2. 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5. 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장학금의 재원 및 지급액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 -----  -----.  <u>다만, 아이디어장학금 지급액은 아이디어의 종류 및 채택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수업료를 지급 받는 자는 수업료 대신에 학교운영지원비, 교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</u></p>